

연구윤리및진실성확보를위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본교의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개정 2015.08.28., 2016.10.25.)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5.08.28., 2016.10.25.)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3-3-13~2 제3편 행 정

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개정 2015.08.28., 2016.10.25.)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개정 2016.10.25.)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개정 2016.10.25.)

7.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개정 2015.08.28.)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6.10.25.)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6.10.25.)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교무처장, 연구처장,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8.28.)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며 간사는 연구윤리지원센터 연구원으로 한다.(개정 2015.08.2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제보 및 접수

제10조(심의) ①제보자는 연구윤리지원센터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08.28.)

②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삭제 2014.01.10.)

제11조(제보자과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

3-3-13~4 제3편 행정

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4.01.10.)
4.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신설 2016.08.30.)

③예비조사는 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8.28.)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 5 장 본 조 사

제15조(본조사 착수·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조사위원회에서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30% 이상의 외부인사를 위촉하며, 외부인사 중 1인 이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본 대학교 직원인 경우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6.10.25.)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7조(출석·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3-3-13~6 제3편 행 정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이의신청·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연구지원기관등에 대한보고) ①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10.25.)

②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를 해당 논문의 발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5.)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 또는 기타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징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총장은 징계 및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인 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 5년간 보관한다.(개정 2015.08.28.)

②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

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경비)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